

조 례 안 검 토 보 고

- ①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조
례안
- ②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 ③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에 관한 조례안
- ④ 거창군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거창군 농업인 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2. 15.
- 나. 제출자 : 이 현 영 의원 외 명
- 다. 회부일자 : 2005. 12. 15.
- 라. 의안번호 : 제2005 - 85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우리 군에서는 건축신고 무료설계반을 운영하여 어려운 농민의 건축시 설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었으나, 2005년 5월 26일 「건축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건축신고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이 지역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 할 수 없도록 변경되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무료설계가 불가능한 건축물이 늘어나게 되어 주민의 부담이 증가되므로, 어려운 농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서 농업인주택을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으로 정하고,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정함(안 제2조)
- 무료설계는 대장 기재신청 대상등의 건축물로 정하였음(안제3조)
- 군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무료설계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설계비 지원대상은 마을공동이용시설물과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 농업인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며(안 제6조)
- 지원방법은 설계사무소와 군수 간에 단가계약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2005년 5월 26일 「건축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신고대상 건축물 중 도시지역 및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 등 대부분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도록 되어 무료설계가 불가하게 되고, 또한 2005년 11월 8일 추가 개정된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만 가능토록 변경되어 인허가 부서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어, 인력부족으로 건축물 무료설계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어려운 농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나.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의견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에서 농업인주택의 범위를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으로 하고,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의 종류를 정하였음.
- 안 제3조 에서 무료설계대상을 「건축법」 제19조에 정한 사항 외 건축사가 아닌 공무원 등이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해, 법령상 가능한 경우 모두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대상범위 설정에 적정한 조치로 검토됨.
- 안 제4조는 군수가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무료설계반을 편성·운영하도록 조례에서 제도화 한 것은 효율적 것임.

- 안 제6조 설계비지원 대상을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과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 농업인 주택으로 한 것은 적절한 대상 규모 선정으로 검토되었음.
- 안 제7조 지원 방법은 건축사 사무소와 연간 설계비 단가를 계약하여 건축설계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예산을 절감 할수 있는 조치인 것으로 검토됨.
- 집행부서 에서는 지원되는 농업인 주택과 지원받지 못하는 일반서민 주택과의 형편성 문제 및 06년 5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고대상 건축물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업무처리량이 증가되어 무료설계반의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무료설계반 운영을 원활히 하여 농민에게 적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설계가 가능한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동 조례 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참고자료

- 「지방 자치법」 제15조
-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9조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1.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11. 21.
- 라. 의안번호 : 제2005 ~ 66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단계별 개정 계획에 따라 1단계 개정(2005. 6. 24.시행, 도조례 폐지)이 완료되어 광고물 등의 허가,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도 조례가 폐지 됨에 따라 군조례를 개정하여 일원화 시키기 위함
-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및 기간연장(안 제2조 내지 제4조)
-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안 제5조)
- . 각종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 등(안 제6조)
-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추가(안 제8조)
- .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안 제20조, 제21조)
- .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안 제27조)

3.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늦게나마 기초자치단체에 업무가 대폭적으로 이양되어 시·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군 조례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으며.
- 현 시가지 간판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수 있으나, 동 조례를 전면개정 하면서 규제를 할수 있는 조항이 많아졌음에도 규제가 강화된 사항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일시에 대폭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마찰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도시미관을 고려한 조례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가지 미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나.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의견

- 시행중인 현행 군조례는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와 위원회 구성·운영과 안전도검사, 종사자 교육,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14조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것이었으나,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35개조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된 것으로 여겨지며.
- 안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한것도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군 조례로 정한 사항임.
- 안 제3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경남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일부 보완하여 군 조례에 정한 사항임.
 - 안 제3조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및 제4조 허가·신고된 사항

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허가 관련절차를 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도 조례(제4조)에 규정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정한 사항으로 일부 보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 9개호를 반영한 사항으로 타당함.
- 안 제6조는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는 규정을, 안 제7조는 광고물 등의 추가 표시방법을 군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함.
- 안 제9조에서는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해 무질서한 지주이용 간판설치를 하지 못 하게 한 것으로 적정함.
- 안 제10조 애드벌룬 표시방법은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해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하고 있으며.
- 안 제11조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를 할 수 있는 편의 시설물을 정하여 무질서를 광고물 난립을 막을 수 있게 함.
- 안 제12조 내지 안 제17조는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의 표시방법과 전단의 배부방법 등 각종 간판에 대한 표시방법을 각종 시설에 맞게 정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18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하면서 주거환경 보호 및 축사나 농작물 피해와 연관될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제한을 할 수 있게 정하고, 공익광고의 표출 방법도 규정하여 주변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의사항 등을 정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게 한 사항을 심의 하게한 것으로 적정함.
- 안 제21조 내지 제25조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의 종류를 정하고,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건축사 등으로 정하였고, 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및 검사절차를

규정하여, 안전도 검사에 합격할 경우 검사필증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7조에는 위반된 광고물 등을 제거하여 관리하는 방법과 반환하는 규정을 정하였고, 제28조에서는 강제철거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원인 제공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30조 내지 32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경우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한 것과 교육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본인 부담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여 안전한 광고물설치를 할수 있게 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안 제33조 및 제34조는 위법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와 시정명령을 받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과 징수절차를 정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한 조치라 검토됨.
- 동 개정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04. 12. 23. 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05. 6. 24. 개정)
-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 행자부 표준개정 조례안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1.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11. 30.
- 라. 의안번호 : 제2005 - 75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7235호 2004. 10. 22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 산업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설물, 상인회 등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재산의 처분제한 등 관리방법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장 화장실 등의 관련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록 함(안 제8조)

- 시설물의 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규정을 정함(안 제11조)
-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

3.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235호 2004. 10. 22공포)되어 2005.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료 등을 정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산업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나.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의견

- 안 제2조 용어의정의에서 시설물, 상인회, 보조사업자 등을 규정하여 조례의 용어 해석상 문제점이 없도록 함.
- 안 제3조(시설물의 소유권)에서 군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시장법인 소유로 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정해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음.
- 안 제4조(시설물의 관리) 군수 소유의 시설물 등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토록 하고, 시장법인은 보조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시설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위탁관리)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회, 시장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 안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 받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를 두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8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시설물 관리주체(군수 또는 수탁자)는 관련조례·정관 및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및 필요비용을 징수할수 있게 정해 사용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
- 안 제9조(지도감독) 시설물 관리자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서류를 검사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한 지도감독 규정을 두어 관리에 용이하게 함.
- 안 제10조(위탁의 취소)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위탁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임.
- 안 제11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행사 및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게 정하여 보조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한 것은 관리상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3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설현대화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법 행정절차 이행을 일괄 처리하도록 조치한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치라 검토됨.
-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1.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11. 30.
- 라. 의안번호 : 제2005 - 76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법률, 제7235호 2004. 1. 30.) 따라 임시시장의 시설기준과 개설 기간, 운영·관리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경상남도 시·군 감사 시정조치사항에 따른 미터법 적용 등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설시장, 상설시장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임시시장 개설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
- 임시시장 개설취소 및 개설기간을 정함(안 제5,6조)
-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8,9조)
- 공설시장의 사용료 납기,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13조)
- 공설시장의 관리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15,18조)
- 원상회복과 변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21조)

3. 검토의견

가. 조례 전부개정 필요성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내용의 정비와 도량형 적용을 현행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각종 시장(공설, 상설, 임시, 정기시장)의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나.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의견

- 조례를 전부개정 하면서 제6장 23개조로 구분하여 이용을 편리하게 정하였음.
- 제1장 총칙에는 목적을 정하고, 용어의 정의에서 공설시장, 상설시장 등 시장의 종류를 규정하였음(안 제1조 및 제2조)
- 제2장은 임시시장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 임시시장의 개설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
 - 시장 개설지정 신청방법과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정하였음(안 제4조)
 - 시장개설 지정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취소와 시장개설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재개발사업 등에 예외규정을 두어 운영상 편의를 기할 수 있게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제3장에는 공설시장의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권의 양도 또는 전매 금지 등 사용권 양도금지 규정을 정하여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함(안 제7조 및 제8조)
 - 시장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명령 대상을 정해 위반 시 취소 및 정지등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은 관리상 적정한 조치라 판단됨(안 제

9조)

○ 제4장은 시장 사용료에 대한 규정으로

- 시장 사용자의 사용료 납입기준을 정하고, 15일 이내 사용 시 반액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10조)
- 사용료는 선납하고, 납입된 사용료의 반환 금지 규정을 정하였음(안 제11 및 제12조)
- 공익상 필요시 등 감면 규정과 시장관리인을 읍·면장이 관리토록 규정하여 효율성을 기하였으며(안 제13조 및 제14조)

○ 제5장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하여 정함

- 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경쟁 입찰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그 수탁자 선정 방법과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수탁자의 결격사유를 군내 거주자 등 6가지로 정하고, 사용료는 연납 및 월납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수탁자가 조례나 지시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 위탁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 내지 제19조)

○ 제6장 보칙에는 원상회복, 변상금, 행정처분시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은 적절한 조치라 검토됨(안 제20조 내지 제23조)

○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유통산업 발전법」 제14조
- 「공산품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 「공산품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